

파인만 신종개인 MMF A-1 호

효력발생일: 2021 년 11 월 11 일

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- 1)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투자대상 명확화	환매조건부 매도	<u>환매조건부 매도 및 환매조건부 매수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. 투자제한	문구 명료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내용 반영	<u>동일종목 투자</u>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. 가.채무증권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%로 한다.	<u>동일종목 투자</u>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가. 채무증권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%로 하며,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"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"라 한다)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)
		<u>동일인 투자 및 거래한도</u>	<u>동일인 투자 및 거래한도</u>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<다목 신설>	다. 이 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5% 이내에서 취득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

집합투자계약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
1)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17 조 (투자대상자산 등)	투자대상 명확화	8. 환매조건부 매도	8. 환매조건부 매도 및 환매조건부 매수
제 19 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문구 명료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내용 반영	2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 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2-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[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]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운용하는 행위 가. 채무증권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%로 한다.	2.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-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[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]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운용하는 행위 가. 채무증권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%로 하며,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 인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"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"라 한다)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)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<p>3.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다목 신설></p>	<p>3.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.</p> <p>다.이 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5% 이내에서 취득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</p>
제 23 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신탁업자의 자료제출 요청 경우 추가	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	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 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 27 조의 2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예외)	법 시행령 254 조 2 항 1 호의 규정내용과 일치시킴	②판매회사는 제 26 조 및 제 27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5%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 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	②판매회사는 제 26 조 및 제 27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5%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 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32 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264 조에 해당하는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회계감사 적용면제 내용 반영	<p>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	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 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0 조 내용 반영	<p>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제1호부터 3호까지 신설></p>	<p>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가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.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.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